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행 정 제 재 · 부 과 금 의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0.00.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회질서 유지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을 위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의 기준시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범위 등 규정 (안 제5조의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체류관련 허가 등의 범위, 제공대상이 되는 외국인 체납액의 규모, 정보제공방법 등 세부내용을 규정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시점 규정 및 제외대상 축소(안 제5조의5)

고액채납자 명단공개 기준시점을 매년 1월1일로 규정하고, 고액·상습
채납자 관리 강화 및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
제외대상 축소

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순서·통지의무 규정(안 제5조의1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환급금
충당의 순서와 통지 의무 등 세부내용을 규정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채납자에 대한 야간수색 대상 영업 규정
(안 제9조의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채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명
문화되고 수색절차가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 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대상 영업범위를 규정

마.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규정 (안 제11조의2)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압류해제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압류해제 요건의 세부내용을 마련

바.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수행 전문기관 규정 (안 21조 3항)

지방세외수입 운영 분석·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세
연구원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3. ~ 12. 3.)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예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11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12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

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6(중전의 제5조의5)제1항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매년 1월1일로 한다.

제5조의13, 제9조의3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때에는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2건 이상의 체납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22조의2제4항의 ‘전문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u> <u>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u> <u>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u> <u>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u> <u>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u> <u>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u> <u>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u> <u>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u> ③ <u>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u> ④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료파일을 작성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u>
<u>제5조의2 ~ 제5조의4</u> (생략)	<u>제5조의3 ~ 제5조의5</u> (현행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와 같음)
<u>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u> ① 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u>100분의 30</u>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3. (생략) ② (생략)	<u>제5조의6(체납자 명단공개)</u> ① -- ----- ----- ----- -----. 1. ----- -- <u>100분의 50</u>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6 ~ 제5조의11 (생략)

<신 설>

③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매년 1월1일로 한다.

제5조의7 ~ 제5조의12 (현행 제5조의6부터 제5조의11까지와 같음)

제5조의13(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7조의7 제1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때에는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2건 이상의 체납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

<신 설>

<신 설>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의 방법 등) ①·② (생략)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1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1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지방세외수입의 분석·진단의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u> (생 략)	<u>③</u> 법 제22조의2제4항의 ‘전문 기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 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을 말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77